

제34회 경상북도의회제차장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진복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남진복·이우청·황재철·백순창·박승직·허 복·
한창화·박순범·김창기·박창석 의원(10명)

2. 제안이유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및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함께돌봄사업 실시에 따른 규정추가(안 제2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규 및 용어
변경(안 제4조, 제7조)
-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6조)

-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8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제12조)

4.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붙임
-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붙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2023. 6. 2. ~ 6. 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55호
- 의견제출: 의견 없음

7.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 필요성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도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상위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으로 변경
-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¹⁾를 추가함
(안 제2조)
-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구체화 하고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이외의 시간동안 다음각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아동의 안전보호 2.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제공 3.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제공
4.체험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돌봄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 그 밖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위원 구성을 20명이내에서 14명이내로 축소하고, 안전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1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²⁾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매년 인구 10만명당 2.0명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³⁾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11.9%인데 반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27.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어린이의 경우 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성인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감안해 볼 때,
- 금번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전반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빈번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여, 도내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일상

2)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단위:명/10만명), 통계청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망률	2.9	2.4	2.6	2.4	2.2

3)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수집·제공

생활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과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조례안 시행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될 경우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 전국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출처 : 한국소비자원, 건,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안전사고건수	72,013	73,007	70,022	74,000	78,596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24,097	24,971	18,494	15,871	21,642
전년대비 증가률	△6.2	3.6	△25.9	△14.2	36.42
어린이 안전사고비율	33.5	34.2	26.4	21.4	27.5

□ 시도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출처 : 한국소비자원,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상북도	829	640	421	326	519
서울특별시	5,697	6,559	5,104	4,369	5,500
부산광역시	1,889	1,975	1,402	1,114	1,391
대구광역시	1,268	1,611	776	654	1,067
인천광역시	3,053	3,175	1,970	1,438	2,012
광주광역시	1,002	953	759	642	880
대전광역시	968	975	490	542	463
울산광역시	1,084	1,026	643	566	718
세종특별자치시	95	123	71	436	1,074
경기도	2,494	2,448	2,293	2,190	3,120
강원도	822	580	935	613	973
충청북도	231	396	605	616	836
충청남도	1,160	1,125	617	647	1,148
경상남도	148	154	158	147	124
전라북도	692	374	259	132	292
전라남도	700	534	317	260	372
제주도	1,378	1,619	896	706	863
해당없음미상	587	704	778	473	290
전국	24,097	24,971	18,494	15,871	21,642

※발생지역은 위해가 발생한 장소이며 해당지역의 주민등록번호를 두고 있는 자료 불수 없음